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0. 12. 8.
- 나. 회부일자 : 2000. 12. 1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0. 12. 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자 : 사회복지과장 이 현 숙)

가. 개정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노인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구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완화(안 제5조)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8조 제4항의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탁의 정지 및 취소규정이 모호하므로 삭제(안 제8조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 화 순)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노인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의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의 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 타 사 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사유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서 노인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함에 따라 현행 서구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구노인복지회관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이상의 노인으로 완화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5조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8조 제4항의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의 정지 및 취소규정이 모호하므로 삭제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8조 제4항

3. 관련근거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5조 및 제8조 제4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 제3차 서구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
 - 기감 11250 - 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65세”를 “60세”로 한다.

제8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용범위)</p> <p>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u>65세</u>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본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p> <p>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u>65세</u>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p>	<p>제5조(이용범위)</p> <p>----- <u>65세</u> -----</p> <p>-----</p> <p>-----</p> <p>----- <u>65세</u> -----</p> <p>-----</p>
<p>제8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u>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p>	<p>제8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 삭제 ></p>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29일

제출자 : 김용희 의원 외 3인

□ 수정사유

-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랑의 식당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가결함.

□ 주요골자

- 안 제5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60세” 이상 노인으로서의 개정을 현행 “65세”로 한다.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5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본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이용범위)</p> <p>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u>65세</u>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본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p> <p>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u>65세</u>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p>	<p>제5조(이용범위)</p> <p>-----</p> <p>--- <u>60세</u> -----</p> <p>-----</p> <p>-----</p> <p>-----</p> <p>----- <u>60세</u> -----</p> <p>-----</p> <p>-----</p>	<p>제5조(이용범위)</p> <p>-----</p> <p>--- <u>65세</u> -----</p> <p>-----</p> <p>-----</p> <p>-----</p> <p>----- <u>65세</u> -----</p> <p>-----</p> <p>-----</p>